

공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의회

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4차 본회의(2022.11.11.)

조례안 · 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목 차

1	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	1
2	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	4
3	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	7
4	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	11

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2. 10. 17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2. 10. 20.

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11.1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)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을 정함(안 제3조)
- 산업재해 예방사업 및 지원을 정함(안 제4조)
- 우수업체 인증 및 지원을 정함(안 제5조)
 - 산업재해 예방활동 적극 시행 사업체에 우수업체 인증
 -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포상,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지원 등
-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기간을 정함(안 제6조)
- 산업재해예방위원회 구성·운영 등을 정함(안 제7조~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
-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 10,000천원 확보 예정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
 - 예고기간: 2022. 8. 17. ~ 9. 6.
 -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장봉기)

- 본 조례안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 3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
- 같은 법 제4의 2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관할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조례 제3조(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) 및 제4조(산업재해 예방 사업 및 지원) 등의 규정에 따라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군이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
- 비용추계서 상에 컨설팅 예산만 편성하여 비용을 추계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음.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2. 10. 17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2. 10. 20.

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11.1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경제교통과장)

○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
도모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○ 근거법령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(기본재산)

○ 대 상 : 경남신용보증재단(이사장 구철회)

○ 사 업 비 : 400,000천원(출연 예정금액)

- 2023 예산편성 요구사항 (단위 : 백만원)

사업기간	2022년 예산액	2023년 요구액*	재 원 별				
			계	균 특	도 비	균 비	기 타
2023년	300	400	400			400	

○ 사업내용 : 거창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컨설팅 지원

4. 참고사항
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
- 경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 공문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장봉기)

- 본 출연안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 및 「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경남 신용보증 재단에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
- 본 출연금은 군 관내 소재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며, 지난해 기준 98개 업체가 지원을 받는 등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으로 보임
- 경남신용보증 재단에서는 2023년도 출연금을 5억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4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대출 수요 변화, 타 시군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 본 출연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2. 10. 17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2. 10. 20.

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11.1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경제교통과장)

-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(사)거창시장번영회에 재위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시설명 :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

나. 시설현황(거창전통시장 내)

○ 공영주차장 : 거창읍 중앙리 154(3,261.35㎡, 지상 2층)

○ 공중화장실(3개소) : 거창읍 중앙리 122-8외 2개소(133.35㎡)

다. 위탁대상 사무 :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

라. 운영계획

- 위탁기관 : (사)거창시장변영회
-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7. 12. 31.(5년)
- 위탁내용

구 분	공영주차장	공중화장실	비고
위탁 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차장 운영 및 수익금 관리 · 주차장 관련 민원 접수 및 해결 · 주차장 시설 수리·수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중화장실 청소 · 화장실 관련 민원 접수 및 해결 · 화장실 수리·수선 · 화장지 비누 등 비품 비치 	
위탁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무상 위탁 ※ 운영 수입금 전액 주차장 및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·관리비로 사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예산지원 : 33,628천원 	

마. 소요예산 : 33,628천원(공중화장실 위탁비용지원)

※ 운영 수입 없이 유지·관리비만 발생

4. 참고사항

가. 위탁 근거법령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5 제2항
-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 위탁할 수 있다.

가. 관계법령

- 「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4조제2항
- 「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6조제1항
- 「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」 제6조제1항
- 「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」 제24조제1항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장봉기)

-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하기 위한 것임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르면 “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“같은 기관에 재계약 할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
-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의 경우 (주)거창시장 번영회에 재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, 재위탁의 경우 만료일 60일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다소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
- 향후 위의 적법하지 않는 사항을 재발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본 동의안의 경우 기타 다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2. 10. 17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2. 10. 20.

다. 상정일자 : 제266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11.1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산림과장)

- 「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개요

- 근거법령 : 「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
- 대 상 :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(이사장 구인모)
- 사 업 비 : 240백만원(출연 예정금액)
 - 2023 예산편성 요구사항 : 240백만원(2022년 260백만원)

○ 사업내용

- (재)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198백만원
- 항공촬영 지적 분석용 프로그램 신규 구입 : 20백만원
-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야(토질 및 콘크리트 등) 확대를 위한 장비 구입 : 22백만원

4. 참고사항

- 「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 및 제9조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장봉기)

- 본 출연안은 「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
- 같은 조례 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 경비 등에 사용되는 것임
- 그간 기업 샘플 제작, 석재 시험분석 지원, 홍보 마케팅 지원, 학술 연구 용역 등 지역 화강석 산업의 부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임
-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관내 34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연구 개발을 통한 판로 개척 등을 위해 화강석 연구 센터에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
- 따라서 본 출연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6. **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**

7. **토론요지 : 없음**

8. **수정안 요지 : 없음**

9. **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

10. **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11. **기타 필요한 사항**